

이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I. 제안이유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와 소득할주민세 세율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자동차세를 3년 경과분부터 1년에 5퍼센트씩 경감하고 최고 50퍼센트 까지 경감, 12년이상은 50퍼센트 경감
- 소득할주민세 세율을 1996년 1월 1일이후부터 10% 부과
- “농지세”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
-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만 둔 것을 시·읍·면까지 확대

III. 관련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76조, 제178조, 제196조의 5, 제210조

IV. 검토의견

○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조세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조례안 제25조제1항1의2”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차등과세도록 함.

연수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조례안 제30조제1항”은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등에 관하여 “①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②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③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④과세자가 비과세자로 되거나 비과세자가 과세자로 된 때”중에서 ①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조례안 제32조”에서는 수시 부과기간을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제33조”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 한곳에만 두던 것을 “시·읍·면”으로 확대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함.

○ “조례 제15조제2항”의 소득할의 세율 10%를 부칙에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징수 부과하던 것을 계속하여 징수 부과하도록 함.

○ 이와 같이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과세를 위하여 농지세 명칭을 변경, 주민세소득할 한시세율을 본문에 반영하는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됨.